M - 183 - 2015

골절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5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근오 교수
- o 제·개정 경과
  - 2015년 11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/ 식품가공기계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-골절기 사용 사업장 중심으로, 이홍석·이관형
 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/ 교육미디어 2010-S-914 조리사의 안전보건
- 고용노동부 / 위험 기계·기구 및 설비 가이드북
- CFR Section 1910.212(a)(3)(ii), Acceptable Guarding for Circular Meat Cutting Saws
- EN 12268:2003+A1:2010 "Food processing machinery-Band saw machines-Safety and hygiene requirements"
- BGR 299(Berufsgenossenschaft Regelwerk: 노동조합규정) "Arbeiten in der Fleischwirtschaft:(육류산업에서의 작업)"
- BGHW(Berufsgenossenschaft Handel und Warendistriution: 소상공인 및 유통 에 관한 노동조합) "Sicher arbeiten in der Fleischvorbereitung und an der Bedientheke(육류 가공 산업에서 안전)"
- KS C IEC 60204-1:2015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자율안전확인신고(육절기는 신고대상, 골절기는 비대상)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M - 183 - 2015

# 골절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식품가공기계 중 골절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 범위

- 이 지침은 고기를 포함한 뼈를 자르는데 사용되는 띠톱 구조로 된 기계의 사용에 적 용한다.
- (1) 목재나 그와 유사한 재질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띠톱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(2) 가정의 주방에서 사용되는 골절기는 적용되지 않는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골절기(Band saw machine for food processing)"라 함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육류, 조류 또는 어류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기계를 말한다.
  - (나) "하부 톱바퀴(Bottom saw wheel)"라 함은 톱날을 구동하기 위한 테이블 밑의 톱바퀴를 말한다.
  - (다) "분할판(Dividing plate)"이라 함은 절단 두께를 조절 가능한 지지판을 말한다.

#### M - 183 - 2015

- (라) "블레이드 가이드(Blade guide)"라 함은 톱날을 안내하는 고정쇠를 말한다.
- (마) "띠톱 긴장장치(Band saw strain system)"라 함은 톱날 장력을 조이고 풀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- (바) "손가락 보호 바"라 함은 자르는 영역에 도달하는 손을 보호하기 위한 테이블 뒤쪽 벽에 있는 장치를 말한다.
- (사) "슬라이딩 이송 테이블(Sliding transfer table)"이라 함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테이블 뒤쪽 벽까지 이동할 수 있는 테이블 표면을 말한다.
- (아) "절단라인"이라 함은 롤러컨베이어 또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진 일체형 절단기 구를 말한다.
- (자) "안전밀대(Pusher)"라 함은 절단 영역으로 제품을 수동으로 밀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- (차) "공급대(Product pusher)"라 함은 수동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테이블 표면을 말한다.
- (카) "연동(Interlock)"이라 함은 제어 설비가 있는 (방호)장치 및/또는 기계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상호 연결 되도록 하는 배치를 말한다.
- (2) 그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 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골절기 형태에 따른 분류

골절기는 Type A, B, C, D 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한다. 이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B형으로 절단높이(SH)가 250 mm 이상 420 mm까지인 중형 골절기가 정육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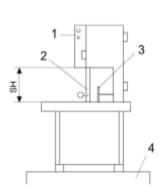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골절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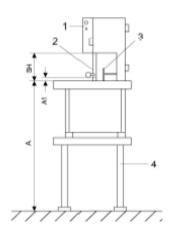
# (1) Type A

- (가) 공급대, 고정된 안전밀대가 있다.
- (나) 절단 높이는 SH < 250 mm(그림 2)이다.
- (다) 탁자위에 얹어 놓고 쓸 수 있는 기계와 기초부가 없는 것으로 설계된 띠톱기 계이다
- (라) 바닥용 기계로 설계된 띠톱기계
  - 절단선 일체형의 띠톱기계 바닥에서 공급대의 표면까지 거리 A는 800 mm부터 1,050 mm까지이다.

M - 183 - 2015



- 1. on / off 스위치
- 2. 안전밀대(Pusher)
- 3. 분할판(Portioning Plate)
- 4. 테이블(Table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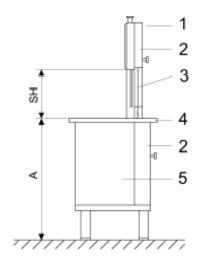
- 1. on / off 스위치
- 2. 안전밀대(Pusher)
- 3. 분할판(Portioning Plate)
- 4. 지지대(Base)

<그림 2> Type A, 안전밀대가 있는 골절기

# (2) Type B

- (가) 공급대, 방호덮개가 있다.
- (나) 절단 높이는 250 mm ≤ SH ≤ 420 mm이다.
- (다) 바닥에서 공급대의 표면까지 거리 A는 800 mm ~ 1,05 0mm이다.

M - 183 - 201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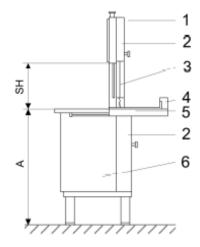
- 1. ON / OFF 스위치
- 2. 개폐기(Door)
- 3. 방호레일(Protective Rail) / 공급대(Product Pusher)
- 4. 이송 테이블(Feed Table)
- 5. 기계 받침대(Machine Rack)

<그림 3> Type B, 방호레일과 고정 이송테이블이 있는 골절기

# (3) Type C

- (가) 슬라이딩 공급대, 방호덮개가 있다.
- (나) 절단 높이는 250 mm ≤ SH ≤ 420 mm이다.
- (다) 바닥에서 슬라이딩 공급대의 표면까지 거리 A는 800 mm~ 1,050 mm이다.

M - 183 - 201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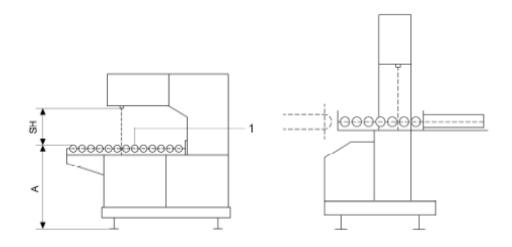
- 1. ON / OFF 스위치
- 2. 개폐기(Door)
- 3. 방호레일(Protective Rail) / 공급대(Product Pusher)
- 4. 손가락 보호 바(Finger Protection Bar)
- 5. 슬라이딩 이송 테이블(Sliding Feed Table)
- 6. 기계 받침대(Machine Rack)

<그림 4> Type C, 방호레일과 슬라이딩 이송테이블이 있는 골절기

# (4) Type D

- (가) 공급과 제거 기구(예. 롤러 컨베이어, 운송 컨베이어); 절단설비 안에 통합되어 있다.
- (나) 절단 높이는 SH < 550 mm이다.
- (다) 바닥에서 이송면까지의 거리 A는 800 mm ~ 1,050 mm이다.

# KOSHA GUIDE M - 183 -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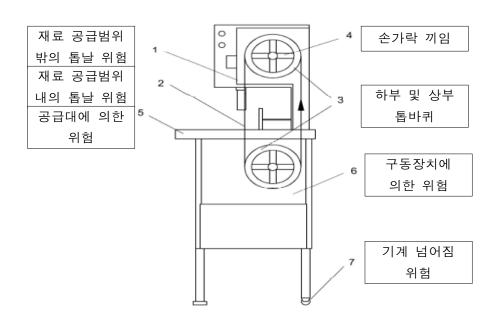


1. 롤러 컨베이어 또는 운송 컨베이어

<그림 5> Type D, 이송 및 제거유닛이 있는 골절기

# 5. 골절기의 유해위험

# 5.1 기계적인 위험



<그림 6> 골절기의 위험영역

M - 183 - 2015

## 5.1.1 톱날 영역에서의 위험

#### (1) 1 영역

- (가) 자르는 범위 밖의 톱날에 의한 위험이 존재한다.
- (나) 손가락을 베이거나 절단되는 위험이 존재한다.
  - 안전조치: 절단날 및 동력전달부 등 구동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.

## (2) 2 영역

- (가) 자르는 범위에서 톱날에 의한 위험이 존재한다.
- (나) 손가락을 베이거나 절단되는 위험이 존재한다.
  - 안전조치: 톱바퀴, 및 띠톱에 들러붙는 고기, 뼈 조각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부착물 제거판을 구비해야 한다.

## (3) 3 영역

손가락이 끼임되는 위험이 존재한다.

- 안전조치: 손가락 끼임위험을 피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한다.

## (4) 4 영역

- (가) 하부와 상부 톱바퀴의 바퀴살에 의한 위험이 존재한다.
- (나) 손에 충격위험을 주는 위험이 존재한다. 안전조치: 톱바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한다.
  - ①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1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 도일 것

#### M - 183 - 2015

- ② 톱바퀴의 윗면 및 전·후·좌·우의 면을 덮는 구조일 것
- ③ 상부의 톱바퀴 덮개는 톱바퀴를 하한 위치까지 낮추었을 경우에도 톱바퀴의 아래 끝까지 덮히는 구조일 것
- ④ 피트의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3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일 것
- ⑤ 상부 톱바퀴의 덮개에는 띠톱의 파단에 의한 띠톱 및 파편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완충재로 라이닝할 것
- ⑥ 상부 톱바퀴의 상부와 덮개의 라이닝 표면과의 간격이 100 mm 이상일 것
- ⑦ 상부 톱바퀴의 덮개에는 내면 톱니쪽의 적당한 장소에 톱바퀴로 부터 이탈 된 띠톱을 받아 멈추게 하기 위한 톱 받이를 설치할 것
- ⑧ 상부 톱바퀴의 덮개에는 톱바퀴와 띠톱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투시창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.

#### (5) 5 영역

- (가) 미끄러지는 공급대에 의한 위험이 존재한다.
- (나) 손이나 발의 충격이나 끼임위험은 슬라이딩 이송 테이블 가이드 밖에 속해야 한다.
  - 안전조치: 제품을 톱날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는 안전밀대를 설치한다.

# 5.1.2 구동장치에 의한 위험

#### (1) 6 영역

(가) 상부와 하부 톱바퀴의 구동장치에 의한 위험이 존재한다.

M - 183 - 2015

- (나) 손가락 또는 손의 끼임위험이 존재한다.
  - 안전조치: 상부 톱바퀴 경사장치를 두어 톱바퀴의 경사가 변화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
#### 5.2 전기적인 위험

충전부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인체의 감전위험이 존재한다.

5.2.1 불충분한 안전수준의 전기 부품

전기 부품의 오작동에 의한 인체의 손상 위험이 존재한다.

5.3 안전성 상실로 인한 위험

#### 7 영역

- (1) 바퀴가 고정된 골절기와 탁자 위에 얹어놓고 쓸 수 있는 기계에 의한 위험이 존재한다.
- (2) 기계가 넘어졌을 때 신체에 충격을 주거나 끼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.
  - -안전조치: 바닥면이 평평하도록 고르기를 하며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.

#### 5.4 소음위험

소음으로 인해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/정신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.

- (1) 영구적인 청력손실
- (2) 귀에서 울림(이명)
- (3) 피로, 긴장 등

M - 183 - 2015

## 5.5 인체공학 원칙들의 불이행에 의한 위험

- (1) 불안전한 몸의 자세나 신체에 가해지는 노동 과부하에 의한 위험
- (2) 물리적 손상 위험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 인간공학적 기계의 설계 오류로 인한 손·팔 또는 발·다리에 가해지는 과부하에 의한 위험

5.6 육류 / 어류 / 조류 제품의 비위생적인 처리에서 초래하는 위험

#### 5.6.1 세균의 원인들

- (1) 육류·어류 제품의 부패
- (2) 식중독을 통한 소비자 건강의 피해
- (3) 조작하는 사람의 감염

#### 5.6.2 화학적 원인들

- (1) 청소 시에 사용하는 소독제의 잔여물을 통한 식품의 오염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이 존재한다.
- (2)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원료, 기계 부품 또는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는 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이 존재한다.

# 6. 골절기 사용 시 안전요구 사항

- (1) 절단위험이 존재하는 절삭공구(예. 톱날 등)를 취급하거나 또는 청소, 운반할 때는 날카로운 부위와 손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부위를 둘러싼 박스나 방호울을 부착한다.
- (2) 비위생적인 작업바닥의 미끄러움과 장애물에 의한 위험에 주의를 해야 한다.

#### M - 183 - 2015

- (가) 피, 고기 잔여물, 기름 잔여물 등
- (나) 장점막 및 장내용물
- (다) 물웅덩이 및 얼음
- (3) 골절기는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습식방식의 청소는 전기 감전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.
- (4) 자르는 영역 밖에서 톱날에 접근하는 것은 방지 하여야 한다.
- (5) 개폐기(Door) 또는 공급대가 10 mm 이상 열렸으면 날은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시간은 4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6) 방호 덮개는 톱날의 덮이지 않는 가장 낮은 위치가 최대 105 mm이다.
- (7) 슬라이딩 이송 테이블은 손가락 보호대를 가진 테이블 후방 벽과 함께 제공되어 야 한다.
- (8) 높이 60 mm 이상의 수형의 조절 가능한 분할판(Portioning Plate)이 준비되어야 하며 분할판은 기울어지거나 뗄 수 있어야 한다.
- (9) 높이 150 mm 이상의 최종 절단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.
- (10) 떼어낼 수 있는 안전밀대가 제공되어야 한다.
- (11) 슬라이딩 이송 테이블은 슬라이드나 가이드 레일로부터 튀어나가거나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야 한다.
- (12) 하부와 상부 톱바퀴의 물림점에 접근하는 것은 예방되어야 한다.
- (13) 하부와 상부 톱바퀴날에 접근하는 것은 예방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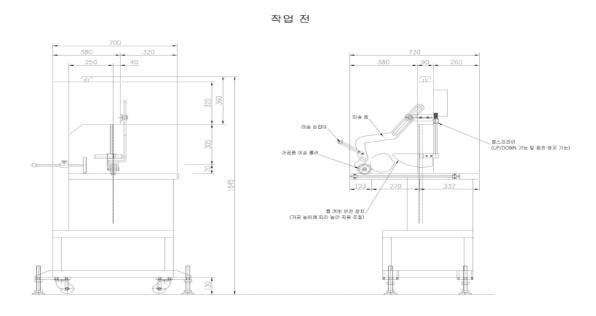
## M - 183 - 2015

- (14) 골절기에 설치된 전기조작부품은 덮개를 덮여야 한다.
- (15) 골절기는 제조자에 의해서 전자기의 방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력을 가져야 한다.
- (16) 바퀴가 장착된 골절기는 사용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- (17) 바퀴가 장착된 골절기는 이동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주요 플러그는 뽑아야 한다.
- (18) 전기 공급 케이블은 골절기가 움직일 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.
- (19) 바퀴가 장착된 골절기는 이동시 적절한 위치에 확고히 고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(20) 골절기는 소음원의 통제 정보와 기계적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.
- (21) 방호울(Casing)에는 개방하지 않으면 톱날에 손가락을 접근할 수 없는 덮개를 설치하고 인터록(Interlock) 한다.
- (22) 인터록을 설치하는 경우 인터록의 안전 관련부의 요구 성능레벨 PL은 KS C IEC 60204-1:2015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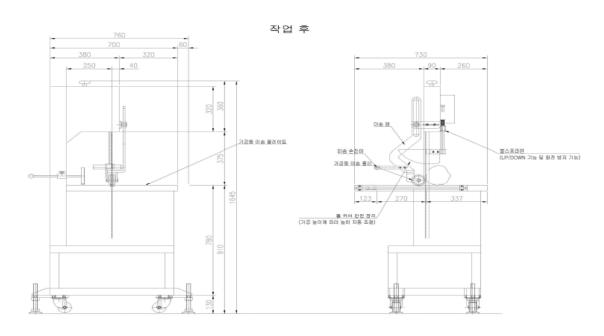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M - 183 - 2015

# 7. 골절기의 개선된 방호장치

# 7.1 이송손잡이의 개선



<그림 7> 이송손잡이 변경 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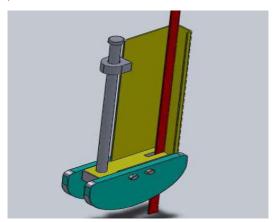
<그림 8> 이송손잡이 변경 후

M - 183 -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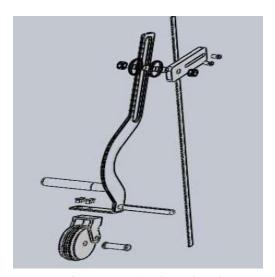
(1) 골절기는 뼈를 깊숙이 넣기 위한 작업자가 톱날과 접촉하는 위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방호조치로 이송 손잡이가 날과 직각으로 장착되어 고기가 붙은 뼈를 자를 때 더욱 깊숙이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.

#### 7.2 방호덮개의 개선

골절기의 톱날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서 자르는 과정에서 뼈에 붙어 있는 살이 물고 내려가면서 절단 제품을 당기게 되어 작업물체에 따라 움직이는 방호덮개(<그 림 9> 참조)가 필요하다.



<그림 9> 작업물체에 따라 움직이는 방호덮개



<그림 10> 톱날까지 밀어 넣은 수 있는 안전밀대